

부산지방법원 2021. 1. 28 선고 2020가단31324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부산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정석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석현

피 고 1. A

2. B

변론 종결 2020. 12. 17.

판결 선고 2021. 1. 28.

주 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6,0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16.부터 2020. 12. 17.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와 피고 A 사이에 2019. 8. 2.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B은 피고 A에게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북부산등기소 2019. 8. 2. 접수 제3023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채권

1) 원고는 피고 A와 사이에, 피고 A가 C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금상환채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A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C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보증일자	보증번호	보증금액	대출과목	대출기관
2013. 7. 23.	D	10,000,000	보통대출금	C 조합
2018. 2. 20.	E	10,000,000	보증부서민대출	C 조합

대출과목

2) 그런데 피고 A는 2019. 7. 20.경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고, 이에 원고는 C조합의 이행청구에 따라 2020. 3. 16. C조합에게 대출원리금 합계 13,398,903원(7,308,903원(원금 7,250,000원 + 이자58,903원) + 원금 6,090,0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원고가 2018. 10. 1.경부터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적용하는 지연손해금율은 연 10%이다.

3) 한편 피고 A는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금 중 7,308,903원(원금 7,250,000원 + 이자58,903원) 및 이에 대한 법적절차비용 등을 변제하였다.

나. 피고 A의 처분행위

피고 A는 2019. 8. 2. 피고 B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북부산등기소 2019. 8. 2. 접수 제30230호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피고 A의 무자력

피고 A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앞서 본 C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A의 유일한 부동산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원고에게 남은 구상원금 6,0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20. 3. 1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20. 12. 17.까지는 약정에 정한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권리

1)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20. 3. 16. C조합에게 피고 A의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함으로써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다.

2)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발생하기 전인 2019. 8. 2. 체결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본 증거들 및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10일 전 이미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던 점, 2 피고 A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C조합 등 금융기관에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원고에 대하여도가까운 장래에 구상금채무를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3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로부터 7개월 후 원고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대위변제함으로써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성립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이 사건에서 피고 A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 할 것이고, 피고 A 및 수익자인 피고 B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피고 A에 대한 65,997,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이 사건부동산에 대한 피고 A의 매매대금 채권과 상계하는 조건으로 피고 A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2)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참조).

3) 살피건대 을나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B의 피고 A에

대한 65,997,000원의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러한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였다 하더라도 피고 B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앞서 본 악의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 B이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피고 B은 피고 A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하던 중 피고 A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정을 알고 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피고 B 역시 피고 A의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어 채권 회수가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경우 다른 일반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하게 될 것이라는 사정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B은 피고 A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주영